

제18장 협력

제18.1조 적용범위 및 목적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전략 및 정책 목표에 따라, 이 협정의 결과를 최적화하고 기회를 확대하며 양 당사국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이행 및 이용 제고에 기여하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수단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른 형태의 양자 협력과 상승효과를 발생시키도록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의 경제 및 기술 협력이 양 당사국 간의 개발 격차를 좁히고 이 협정의 이행 및 활용으로부터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한다. 경제 및 기술 협력은 각 당사국의 상이한 발전 수준과 국가 역량을 고려한다.
4.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목표로 하는 협력 이니셔티브에 특히 주목하기로 합의한다.
 - 가. 생산적 상승효과를 제고하는 것, 무역 및 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경쟁력 및 혁신을 증진하는 것
 - 나. 이 협정이 창출하는 기회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사회연대경제의 생산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그들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
 - 다. 이 협정의 이행 및 이용 제고를 위하여 양 당사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라. 이 협정의 다른 장에서 확인된 협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5.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 간 협력은 이 협정의 그 밖의 장과 그 밖의 양자 협력 메커니즘에 규정된 양 당사국 간 협력 및 협력활동을 보완할 것이다.

6. 협력활동은 이 협정에 규정된 일반 및 특정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 차원 모두에서 수립되며 서로 보완된다.

제18.2조

협력 분야

1. 양 당사국은 다음의 분야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상호 유익한 조건을 통한 협력의 수단 및 메커니즘의 사용을 촉진하기로 합의한다.

가. 농업 및 농산업

나. 수산업 및 양식업

다. 임업

라.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마. 제조업

바. 정보통신기술

사. 과학, 기술 및 혁신

아. 보건의료 산업

자.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사회연대경제

자. 기업환경 개선

카 해양

파. 문화

타. 관광, 그리고

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기술된 분야에서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며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제18.3조

협력 형태

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기술 지원

나. 관련 정보의 교환

다. 인적자원 훈련을 포함한 역량 강화

라. 제도의 설계 및 강화

마. 장학금, 학술 교류 등과 같은 과학 또는 교육 활동 종사자의 교류

바. 세미나 및 워크샵

- 사. 분야별 종합추진계획 수립
- 아. 발전전략 수립
- 자. 우수 관행 공유
- 차. 공동연구 및 개발 사업
- 카. 공동의 무역 및 투자 증진 활동
- 파.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기술 이전, 그리고
- 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형태

제18.4조

이행, 위원회 및 접촉선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최적의 집행 및 혜택의 이용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행되는 협력 활동의 이행 및 후속 조치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2. 이 장의 이행 및 협력 활동의 후속 조치를 위하여,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될 것이다. 위원회는 이 장의 부속서에 따라 양 당사국의 통상부처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부처의 대표로 구성된다.
3.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회합한다. 각 회합의 일자, 장소 및 의제는 접촉선 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한다.
4.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가. 이 장과 이 협정의 그 밖의 장에 규정된 무역 관련 협력 이니셔티브 이행의 진전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

- 나. 양 당사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이 장에 따른 협력 방법과 활동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
 - 다. 주제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국가 협력 기관, 연구 기관 및 대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관련 당국 간 조정을 하는 것
 - 라. 사업 제안, 사업 상황 및 이 장의 전반적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접수하고 전달하며 검토하는 것, 그리고
 - 마. 공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이 장과 관련된 그 밖의 사안들
5. 양 당사국은 가능한 협력 활동에 관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할 것이다.
-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에콰도르의 경우,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18.5조

자원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활용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경제 협력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자원 및 그 밖의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3. 이 장의 경제협력을 위한 자금조달은 각 당사국의 국가 역량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부담된다.

4. 위원회는 위원회가 적시하는 특정 협력 활동을 위한 자원의 제공을 검토한다.

제18.6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부속서 18-가
농업 및 농산업 협력

양 당사국은 농업 분야에서 공공 부문, 민간 부문 및 학계의 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특히

- 가. 다음과 같은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사업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증진한다.
 - 1) 축산 및 축산 가공업, 작물경작, 원예, 관개농업 및 천연섬유 생산을 포함한 농산업
 - 2) 농업개혁 및 농업정책
 - 3) 비도시 지역 개발
 - 4) 도시 근교 및 도시 농업
 - 5) 환경 및 천연자원 경제와 관리, 그리고
 - 6) 지속 가능한 보전농경기술
- 나.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을 증진한다.
- 다. 농장 및 관련 생산시설 연구방문을 장려한다. 그리고
- 라. 양 당사국 간 농산물 무역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증진한다.

부속서 18-나
수산업 및 양식업 협력

1. 양 당사국은 어류와 수산물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수산업 협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인간의 직접 소비를 증대할 목적으로 종자의 개발과 수생생물 어업 및 양식종의 가공을 위한 연구 및 생산역량을 강화하는 것
 - 나. 책임 있는 어업이라는 접근 방식에 따라 정보교환 및 천연자원의 보존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 다. 평등과 상호 이익의 원칙을 기초로 수산물 및 양식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및 위생 관리 메커니즘을 지원하고 개발하는 것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수산업 및 양식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 가. 수산업 및 양식업 개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을 강화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는 것
 - 나. 식량안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수산 및 양식 자원의 소비와 더불어 인간의 직접 소비를 위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증진하는 것
 - 다.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을 방지하는 것
 - 라. 공동으로 조직된 과정, 방문, 세미나 및 워크숍에의 참여를 통하여 양 당사국의 국가공무원과 수산업계 구성원의 훈련을 증진하는 것
 - 마. 양 당사국의 연구기관 간 파트너십 및 교류 구축, 그리고

- 바. 수산협력약정¹을 통하여,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양 당사국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하고 최적화된 활용을 증진하는 것

¹ 수산협력약정은 특히, 수산자원, 수생생물종 및 양식업 분야에서의 양 당사국의 무역원활화 및 연구증진에 관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부속서 18-다
임업 협력

1. 양 당사국은 임업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협력을 적절하게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 가. 관련 지표의 개발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의 이행에 대한 협력
 - 나. 개발도상국의 산림탄소저장량(예: REDD+)에 대한 우수 관행 및 전문 지식 교환에 대한 협력
 - 다. 국제 시장에서 인정된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 지원(특히 소규모 생산자와 지역사회를 위하여)에 대한 협력
 - 라. 친환경임업 기술 개발 및 산림 생태계 보전에 대한 협력
 - 마. 임업 가치사슬 생산물의 가공, 공급 및 무역에 대한 협력
 - 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조치에 대한 협력
 - 사. 산불, 병충해의 방지 및 통제와 불법 교역을 감소하기 위한 행동을 포함한 산림 보호에 대한 협력
 - 아. 산림 생태, 토양과 이러한 자원의 지리적 역학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참여형 산림 계획에 대한 협력
 - 자. 보존을 목적으로 재조림을 통한 산림복원에 대한 협력
 - 차. 조림과 목재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 사업

- 카. 연구 및 개발, 교육과 훈련에 대한 협력

- 파. 각 당사국의 법 제도에 따라 독립적 감독기관을 통한 것을 포함한 임업적 방
제 메커니즘에 대한 협력

- 타. 산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기술 및 기법에 대한 협력

- 하. 각 국가에 존재하는 상이한 산림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관
련 경험의 교환에 대한 협력, 그리고

- 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에 대한 협력

부속서 18-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

1.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광물자원이 중요함을 인정하며, 더 강하고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그들의 공동 목적이 지속 가능하고 청정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및 사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한다.
3. 양 당사국은 환경보호와 보전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개발 측면뿐만 아니라 각국의 법률 및 내부 절차를 고려하는 데 동의한다.
4. 위에 언급된 것을 고려하여,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가. 공동 프로그램과 자금조달 또는 태양광, 풍력, 수소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같은 청정 에너지 관련 분야
 - 나. 에너지 및 광물자원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 영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의 설계 및 개발
 - 다. 광업 관련 환경적 책임의 복원을 위한 광업 기술의 교환
 - 라. 국가 법률에 따라 파리협정상의 에너지 발생 배출 기준, 에너지 효율성, 재생 에너지 이니셔티브, 시장과 비시장 메커니즘의 증진
 - 마. 환경영향이 낮은 에너지 인프라의 건설
 - 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 사업 기회와 투자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활동

사. 에너지 효율 조치를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에 관련된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교류의 증진

아. 양 당사국 간 공공, 학계 및 민간 부문의 관련 전문가, 기술자 및 지도자에 의한 것과 같은 방문 및 교류, 그리고

자. 양 당사국의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분야

5.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가 법률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 정보의 교환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지질학적 자료 또는 정보

나. 입찰 및 채굴사업과 같은 투자 기회

다. 관련 법, 규정 및 정책

라. 광해방지기술, 인프라 개발과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와 지역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

6. 각 당사국은 제19.2조(통보 및 정보의 제공)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법과 규정이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7. 주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극심하고 지속적인 공급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고 적절한 협력 메커니즘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력 위원회에 회합을 요청할 수 있다.

8.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한쪽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협력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비밀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에 응답한다.

부속서 18-마
제조산업 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 분야에 중점을 두고, 무역, 투자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가. 펄프

나. 알루미늄

다. 조선 및 조선소

라. 구리

마. 석유화학

바. 철강

사. 섬유, 의류, 디자인 및 패션

아.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자.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차. 가공식품 및 음료

카. 화장품 및 세면용품

파. 플라스틱, 그리고

타. 그 밖의 양 당사국의 관심사항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제조업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가. 국내 생산에서 부가가치의 창출 및 다양화와 양 당사국 간 산업 생산성의 지속 가능한 증대를 촉진

나. 우수 관행의 교환,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혁신(R&D&I) 센터, 기술 이전 센터, 과학기술단지, 기술산업단지 및 그 밖의 그러한 장소의 개발을 통하여 추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제조업 및 농산업 제품의 혁신을 지원

다. 순환 경제, 생태 효율성, 재활용 및 소비 후 관행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와 충전소의 생산 및 사용에 특히 중점을 둔 환경에 기초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라. 생산 혁신을 위한 인적자원 훈련과 산업 생산 전략의 창출, 이행 및 개발을 포함한 역량 강화의 장려

부속서 18-바
정보통신기술 협력

1. 양 당사국은, 국내적 및 국제적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업 관행이 민간 부문의 주도로 급속히 발전함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이 정보통신기술 이용의 혜택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그러므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은 분야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간의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

가. 사이버보안

나. 전자서명의 상호운용성

다.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처리, 관리, 유통 및 무역

라. 양 당사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한 과학적·기술적 협력

마. 정보기술단지의 연구, 개발 및 관리

바.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정보기술 서비스의 연구 및 개발

사. 양 당사국이 네트워크 및 통신의 연구·개발 및 배치의 필요성에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활동

아. 국제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 그리고

자. 양 당사국의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부속서 18-사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

1. 양 당사국은 특히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기술 생산자와 사용자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인프라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의 첨단 과학 또는 핵심 기술 분야에 특히 중점을 두고, 공동 연구 및 개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가. 생명공학

나. 나노기술

다. 신소재

라. 환경기술

마. 과학 및 기술 정책, 그리고

바. 연구 및 개발 시스템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활동에서 적절한 경우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가. 필요한 경우, 설비 공유, 비밀이 아닌 과학 및 기술자료의 교환 및 제공, 그리고 가능한 경우 과학 표본의 교환을 포함하는 공동 연구 및 개발과 고등교육

나.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

다. 세미나, 학술토론회, 학회 및 그 밖의 과학 및 기술 회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참

여를 포함하여 그러한 활동의 공동 주최

- 라. 양 당사국이 기존의 국가 계획 또는 정책에 따른 공동 과학 및 기술 연구 활동의 필요성에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활동의 증진
- 마.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관행, 정책, 법, 규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교환, 그리고
-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과학 및 기술 협력

부속서 18-아
보건의료 산업 협력

1. 양 당사국은 공중보건을 향상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며, 의약품, 의료 기기 및 화장품을 포함한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의 상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공중보건 산업 분야에서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다음에 관한 정보 교환

- 1) 공공정책
- 2) 법, 규정 및 결의안, 그리고
- 3)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학회,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박람회 및 그 밖의 행사

나. 다음을 위한 관련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

- 1) 연구원, 학생 및 관련 산업 관계자의 교류
- 2) 공동 연구 프로그램 및 사업
- 3) 보건의료 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 4) 제품 품질 개선, 공급망 연계, 기술 무역 등
- 5) 상호투자 기회의 증진 및 촉진, 그리고
- 6) 약학 학위가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 및 학생을 위한 제약 산업의 다른

생산 지역에 대한 인턴십

부속서 18-자
소상공인·중소기업 협력

1. 양 당사국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경제 성장, 고용 및 혁신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서 성별 기반 접근법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이 협정이 창출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그 기회로부터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 플랫폼의 설립 및 유지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관련된 이 협정 관련 정보의 공유 그리고 양 당사국 간 지식, 경험 및 우수 관행을 공유하기 위한 정보 교환을 증진한다.
3. 제1항에 따라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될 정보는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 가. 이 협정의 전문
 - 나. 그 당사국이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관련된다고 여기는 무역 및 투자 관련 법과 규정에 관한 정보, 그리고
 - 다. 이 협정이 제공하는 기회로부터 혜택을 얻고자 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유용하다고 여기는 추가적인 사업 관련 정보
4.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그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촉진적이고 투명한 무역 규칙 및 규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장려하는 것
 - 나. 기업 간 파트너십의 증진 및 촉진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를 개선하는 것
 - 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증진하는 것

- 라. 혁신과 기술의 사용 및 이전을 장려하는 것
- 마. 소상공인·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우수한 규제 관행 및 역량 강화를 증진하는 것
- 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및 경쟁력 향상에 관한 우수 관행을 공유하는 것
- 사. 관리기술 개발, 제품 품질 개선, 공급자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우수 관행 및 지식을 공유하는 것
- 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본 및 신용에 대한 접근 개선, 무역 원활화를 포함한 분야에서 정보 및 우수 관행을 교환하는 것
- 자. 신규 수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후원, 수출자 클럽)
- 차.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박람회, 무역 사절단과 같은 네트워킹 기회를 증진하는 것, 그리고
- 카. 환경 관리, 순환경제 및 그 밖의 상호 관심 대상과 같은 분야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협력을 장려하는 것

5. 양 당사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화를 소집할 수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화는 민간 부문, 피고용인, 비정부기구, 학계 전문가, 다양하고 소외된 집단이 소유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그리고 각 당사국의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부속서 18-차
기업환경 개선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무역과 투자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더 호의적인 기업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전달과 조정자 및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담당하게 될 접촉선을 지정한다. 접촉선은
 - 가. 에콰도르의 경우,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기업환경 개선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 가. 양 당사국의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공공 정책의 설계, 이행 및 평가에 대한 협력
 - 나. 양 당사국의 기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창구 프로그램에 대한 우수 관행과 전문 지식 교환
 - 다. 투자의 사후 관리에 대하여 특히 전문 지식 공유, 정보 교환 및 기술 지원 참여를 통한 협업
 - 라. 투자와 관련된 법, 규정, 정책 및 그 밖의 것에 관한 정보 교환, 그리고
 - 마. 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 활동 장려

부속서 18-카
해양 협력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해상 운송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가. 항구 운영, 관리 및 개발 강화를 위한 개발 전략의 수립
- 나. 물류 효율성과 선박 유지보수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은 해상 항구의 설계와 강화
- 다. 항구 운영, 관리 및 개발에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마련,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부속서 18-차

문화 협력

1. 상호 이익의 목적상, 문화 협력이 창조적 산업의 발전, 문화적·경제적 교류의 강화, 양 당사국 간 이해의 증대 그리고 문화 산업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시청각(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엔터테인먼트(극장, 라이브 밴드, 뮤지컬 등을 포함한다), 문화유산,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와 비디오 게임과 같은 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관련 산업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은 특히 가.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 교환, 나. 기술 지원, 다. 지식 공유, 라. 문화 분야에서의 시청각 공동 제작과 같은 공동 제작의 확대, 그리고 마. 문화 서비스 활동의 목적상 출입국 절차 및 일시 입국의 활성화를 통하여 협력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그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불법 거래를 확인하고 원상태로 복원하며 피하는 것을 포함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은 국가유산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적 문서의 디지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청각 분야에서의 공동제작협정을 고려하고 협상하는 데 동의한다.
5. 제4항에 언급된 공동제작협정은 일단 체결되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6. 제4항에 언급된 공동제작협정을 준수하는 공동제작 사업은 각 당사국 영역에서 국내 제작물로 간주되며 따라서 각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정부지원을 포함한 모든 혜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부여받는다.

부속서 18-파

관광 협력

양 당사국은 관광이 양국 간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고 양국의 경제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중요한 산업임을 인정하면서, 다음을 하도록 노력한다.

- 가. 윤리적이고 책임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과 지역 공동체 간의 조정을 보장한다.
- 나. 양 당사국의 웹사이트 간 연결 및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한다.
- 다. 양 당사국의 관광객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 라. 양 당사국 영역에서 관광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에 대하여 협력한다.
- 마. 양 당사국 영역에서 생태관광 및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업한다.
- 바. 관광 및 관련 분야에서의 관련 통계, 홍보자료, 정책 및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 사. 관광 및 교통 당국과 기관이 양 당사국 간 항공 연결을 개선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한다.